

# 구미시 노인인권지킴이단 운영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4. . .
발 의 자	이명희 의원 외 12인

# 구미시 노인인권지킴이단 운영 조례안

## (이명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24. . .

발 의 자: 이명희·김낙관·김영태·김원섭  
김재우·김정도·김춘남·박교상  
박세채·소진혁·신용하·양진오  
정지원 의원(13인)

### 1. 제안이유

구미시 노인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 입소노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구미시 노인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 노인학대예방을 목적으로 함.

### 2. 주요내용

- 가. 시장의 책무 및 시설장의 책무(안 제3조~제4조)
- 나. 인권지킴이단 관련(안 제5조~제8조)
- 다. 교육 및 예산지원(안 제9조~제10조)

### 3. 조례안: 붙임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 나. 부서검토: 노인장애인과 의견제출(붙임)
-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 구미시 노인인권지킴이단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인권침해 상황 점검을 위한 구미시 노인인권지킴이단 운영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 입소노인의 인권침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의 양로 시설

나. 법 제32조제1항제2호의 노인공동생활가정

다. 법 제34조의 노인의료복지시설

2. “시설장”이란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시설의 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 입소노인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장의 책무)** 시설장은 시설 입소노인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시설 종사자와 함께 최선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인권지킴이단 구성)** ① 시장은 시설 입소노인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구미시 노인인권지킴이단(이하 “인권지킴이단”이라 한다)

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인권지킴이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인권지킴이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인권지킴이단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주민 대표(통·이장 등)

2. 보호자 대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공무원, 종교인, 변호사, 의료인

3. 건강보험공단 요양직 종사자,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4. 노인인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⑤ 위촉된 인권지킴이단원은 법 제51조의 노인복지명예지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⑥ 인권지킴이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6조(인권지킴이단 운영)** ① 인권지킴이단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인권상담을 시행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② 인권지킴이단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활동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방향 등을 각 호와 같이 논의한다.

1. 인권지킴이단 인권 활동에 대한 전반적 평가

2. 인권침해 및 개선 사례 공유
3. 관계기관의 조사 필요성 제기
4. 인권 관리 진단 및 시정·개선사항
5. 기타 향후 활동 방향 등

③ 인권침해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의에서 논의하며, 사안이 중하고 판단될 경우 법 제39조의6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7조(인권지킴이단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인권지킴이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활동 실적을 토대로 연임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단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인권지킴이단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인권지킴이단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단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단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단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법 제39조의17에 해당하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인권지킴이단을 대표하고, 인권지킴이단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교육) ① 시장은 인권지킴이단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법 제6조의3에 따른 인권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인권지킴이단 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인권지킴이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율적으로 정한다. 단, 인권지킴이단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거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 ①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인권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내용·방법,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생략)
- ② ~ ③ (생략)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

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3. 삭제

#### ② (생략)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1. ~ 16. (생략)

#### ③ ~ ⑥ (생략)

**제39조의12(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의한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판결과 동시에 선

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13. (생략)

② ~ ⑫ (생략)

**제51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 ① 복지실시기관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

② (생략)

# 검 토 의 견 서

부서명 : 노인장애인과

조 례 명	구미시 노인인권지킴이단 운영 조례안
<p><input type="checkbox"/> 검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근거 법령<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li><li>▪ 「노인복지법」 제51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li></ul></li></ul> <p><input type="checkbox"/> 주요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인권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li><li>○ 목적, 용어 정의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관한 사항</li></ul> <p><input type="checkbox"/> 검토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시설 입소 어르신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시민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근거 조례가 없어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에 의거 운영되었음.</li><li>○ 구미시 노인인권지킴이단 운영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노인 인권지킴이단이 더욱 활성화 되어 어르신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li></ul> <p><input type="checkbox"/>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기대효과 : 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 강화 및 시설 내 인권 개선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li><li>○ 소요예산 : 미첨부<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li></ul></li><li>○ 문 제 점 : 해당없음</li></ul>	

# 구미시 노인인권지킴이단 운영 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구미시 노인인권지킴이단 운영 조례안」 제10조(예산지원등)의거 노인인권지킴이단원의 활동 및 회의수당

###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예산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

### 3. 미첨부 사유

- 노인인권지킴이단 활동에 예상되는 비용은 25년 24,000천원으로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됨

### 4. 작성자

-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시설팀 김현태(☎054-480-5164)